

혁신정책

#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및 제언

KISTEP 제도혁신센터 서지현 · 김희정



##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및 제언

('22.11.3, 제도혁신센터 서지현(기관평가팀), 김희정)

### 1 작성 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3월)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8월)
  - \* 혁신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 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2020년 폐지되기까지 평균 연 1회 개정되었으며, 혁신법 제정·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을 정례화
- 연구현장·관계부처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22.8.26)(이하 '제도개선안')을 마련
  - 온라인 창구, 간담회 등 다각적 방식으로 현장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전문가(제도개선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안에 반영
- 본고는 '22년도 연구현장 제도개선 의견수렴 결과 및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제도개선 추진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

### 2 연구현장 제도개선 의견수렴

- 현장수요에 기반한 연구제도개선을 위해 연구현장 의견수렴 및 검토 추진
  - ※ 연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누구든지 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혁신법 제28조)
  - 간담회, 매뉴얼 개정 수요 조사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연중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관리하고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현장 의견 접수(4~5월)
  - 연구현장 의견수렴 결과 개별 제안사항 기준 총 346개\* 의견 접수
    - \* 온라인 IRIS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의견 83건, 연구기관 제출 의견 23건 외 제도개선간담회 179건, 매뉴얼 개정수요(15건), 개별 접수 의견 등 포함
  - '연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장의 제도개선의견 검토·분류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6~7월)
- 연구 주체와의 관련성에 따라 공공연, 대학 등에 '공통'으로 분류된 의견이 191개,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 해당 의견이 75개, 기업 44개, 대학 36개 순으로 분포
  - 주체 간 공통 의견 중 연구수당 관련 의견이 총 10건(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부처 규정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한 규정표준화(8건, 4%) 관련 의견이 후순위
  -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관련 의견 6건(8%), 파견비 관련 의견 4건(5%) 순으로 기본사업 연구비 사용 관련 개선의견 비중이 높음
  - 대학은 학생인건비와 비전임교원등의 인건비 관련 의견이 각각 5건(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업은 인건비(5건, 11%)와 기술료(4건, 9%) 순임

- 혁신법의 범위에서 제도분야를 분류한 결과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관련 의견이 115개(33%)로 가장 많았으며, 과제 선정평가 관련 의견이 24개(7%), 과제 협약 관련 21개(6%), 성과평가 14개(4%) 순으로 분포
  -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관련 의견 중 사용용도 및 기준 등 관련 의견이 총 89건으로 연구비 관련 의견의 77.4%에 해당

[그림1] 연구개발비 관련 소분류별 의견 현황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소분류	개수	비율(%)
항목별 사용용도, 기준, 절차	89	77.4%
정산절차	10	8.7%
시설·장비비 사용 특례	8	7.0%
학생인건비 특례	5	4.3%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	3	2.6%
<b>합계</b>	<b>115</b>	<b>100</b>

- 선정평가 관련하여 과제 유사성 검토, 평가위원의 전문성 관련 개선의견이 다수이며, 협약 관련 의견으로 국제협약 지원, 협약변경 절차 개선, 협약주체 확대 등이 제안됨
- 성과평가 관련 주요의견으로 연차평가와 차별화된 단계평가 운영, 국제협력 및 도전혁신형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과도한 자료요구 제한 등을 포함
- 연구현장으로부터 접수된 총 346개 의견 중 혁신법 범위 외 정책 제안으로 분류된 86개를 제외한 260개 의견을 제도개선위원회가 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에 따른 중요도와 시의성에 따라 분류 및 유사의견 통합

〈표1〉 중요도-시의성 검토 결과

구분	중요도·시의성					합계
	상		중		하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해당없음	
공통	19	2	16	58	28	123
공공연	20	2	5	23	13	63
기업	-	1	11	20	8	40
대학	3		8	13	10	34
<b>총합계</b>	<b>42(18*)</b>	<b>5</b>	<b>40</b>	<b>114</b>	<b>59</b>	<b>260</b>

\* 유사의견 통합 후 의견 수

※ 상-단기: 제도개선이 보편적으로 중요하고 개선 시급

상-중장기: 중요성은 높으나 타 법률(타부처)과의 연계 등 중장기적 검토·추진 필요

중-단기: 운영규정상 발생하는 애로 등 단기 개선 추진 가능

중-중장기: 개선 필요성 및 파급성이 일부에 편중되고 타 법률(타부처)과의 관련성 등 검토 필요

하: 혁신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제도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불편사항 등

- 제도개선위원회 검토 결과 ‘상–단기’ 개선사항으로 분류된 18건 중 10건이 ’22년도 제도개선안에 반영되었으며, 그 외 개선사항은 관련 시스템 운영 개선, 매뉴얼 수정·보완 등을 통해 개선 추진

〈표2〉 연구현장 ‘상–단기’ 개선과제 개선 추진 현황

'22년도 제도개선안 반영	시스템 운영 개선, 지침 수정·보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법 취지에 부합하고 부처의 특성 반영한 통합시스템/규정 마련</li> <li>부처별 혁신법 이행 점검</li> <li>연구수당 계상 방식 유연화 및 편성 기준 개선</li> <li>해외연구자 초청시 유치 시 인건비 계상 허용</li> <li>페이퍼 less 행정 절차 마련</li> <li>등록 전 미공개 출원 특허는 특허 포기절차 대상에서 제외</li> <li>출연(연) 기본사업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변경 절차 간소화</li> <li>출연연 기본사업 연구활동비 내 해외파견비 계상 허용</li> <li>출연연 연구개발부담비 사용기준의 연구개발부담비 정의 구체화</li> <li>혁신법 내 출연(연) 주요사업 관련 제약사항 대폭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혁신법 전담 Q&amp;A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li> <li>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기한 현실화</li> <li>특허출원 시 위탁연구개발 기관 소속인의 발명자 포함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li> <li>부처별 상이한 외부인력 인건비 계상 기준 통합</li> <li>‘인건비 계상을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항목 삭제</li> <li>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인건비 및 연구수당 정산 간소화 규정 반영</li> <li>연구시설·장비의 변경 범위의 명문화 및 금액 변경의 범위 지정</li> <li>신규과제 제출 마감 후 종료과제 연장으로 6개월 초과 시 3책5공 예외과제로 인정</li> </ul> <p>※ 일부 과제의 경우 추가 협의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 추진 필요</p>

### 3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요약

#### 1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의 정착

##### ① 범부처 규정 점검에 따른 부처별 규정 정비 권고

- (문제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부처 규정 간 불일치로 인한 현장의 혼란 지속
- (개선방안) 부처·전문기관의 자체규정 점검결과를 토대로 혁신법과의 합치성을 위한 규정 정비 권고

##### ② 연구수당 계상의 유연성 강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문제점) 혁신법에 따라 연구기간 대상 최초 1회 협약체결 이후 연구수당 조정이 불가\*하여 현장 애로 발생  
\* 사업비, 참여인원, 인건비 계상 등의 변화 반영 불가
- (개선방안) 전체 연구기간 내 단계 시작 시점에 연구수당 계상액 조정 허용

##### ③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3책 5공 완화 [혁신법 시행령]

- (문제점) 중앙행정기관(국립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성실수행\*\* (3책5공)이 적용됨에 따라 조직의 업무분장을 제한하는 등 기관운영의 자율성 침해 우려  
\* 농촌진흥청, 국립농립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 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1항에 따라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예: 3책5공)
- (개선방안)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3책5공 적용 제외

##### ④ 출연(연) 기본사업\* 수행 시,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 (문제점) 출연(연) 기본사업 수행 시 주요사업과의 관련성이 모호한 비용(행정직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등) 사용에 애로
- (개선방안) 출연(연) 기본사업의 경우 기관 공통비용의 세부 사용용도를 자체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또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정통부고시)의 출장비 사용용도에 출연(연) 기본사업 수행에 필요한 해외 파견 비용 인정

## 2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 강화

### ①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한 지원 확대 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문제점) 해외 우수연구자 국내 유치 시 필요한 장려금 및 체재비 등에 대한 비용 사용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우수 해외연구자 유치에 애로
- (개선방안) 혁신법 시행령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른 연구활동비 내 해외연구자 유치 장려금 및 체제비 등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세목 신설

### ② 사회문제해결 등 수요자 참여 국가연구개발의 연구비 사용 편의 제고 혁신법 시행령

- (문제점) 연구개발 기획·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수요자(일반 국민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급 근거가 모호하여 해당 참여에 대한 비용 지급에 애로
- (개선방안) 혁신법 시행령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의 '연구활동비' 내에 수요자의 참여에 대한 비용 사용 항목을 명시하여 비용 지급 근거 명확화

### ③ 민간 협업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혁신법 시행령

- (문제점) 중견기업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으로 인해 성장과 지원이 필요한 중견기업의 국가연구개발 참여가 어려움
- (개선방안)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정부 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개정  
※ 중견기업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연구개발비의 70/100 이하에서 75/100 이하로 개정

### ④ 보안책임자 및 보안교육의 명시를 통한 연구보안 강화 혁신법 시행령

- (문제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요정보(보안과제 등)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보안대책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이 미비
- (개선방안) 혁신법 시행령 상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연구기관 보안책임자 지정 및 보안교육 실시와 기관의 보안대책 포함 사항을 명시

## 3 연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문제점)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물가 상승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상향 필요  
※ 과기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대비 상향 설정한 학교는 17.7%에 불과
- (개선방안)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 학생들의 연구몰입 지원  
\* 학사 월100만원→월130만원(30만원↑), 석사 월180만원→월 220만원(40만원↑), 박사 월250만원→월300만원(50만원↑)

### ② 제재처분 관련 기준 명확화 및 합리화 혁신법 시행령

- (문제점) 1억원 초과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제재사유별 감경기준이 제한적이어서 합리적인 제재처분 곤란
- (개선방안) 1억원을 초과하는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도한 제재처분 방지를 위해 감경사유 세분화 및 감경기준 제한 완화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비 중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150

### ③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증명자료 보관 의무 완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문제점)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기관에서 여전히 불필요한 종이 문서를 보관하는 사례가 있어 관행 개선 필요
- (개선방안)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전자화문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보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의무 부여 및 감사원, 부처 감사부서 등과의 협의 필요

#### ④ 이해충돌을 고려한 윤리가이드라인 마련

- (문제점) 혁신법을 통해 연구개발기관이 이해충돌을 포함한 자체연구윤리규정을 마련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나 연구윤리 관련 이해충돌 가이드라인이 없어 연구현장에 혼란
- (개선방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22.5월 시행)을 반영하여 과학기술분야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내용을 추가한 「국가 연구개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22.5)

#### ⑤ 지식재산권 포기 대상에서 출원 특허 제외

혁신법 시행령

기타 규정 / 매뉴얼·가이드라인

- (문제점) 다양한 지식재산 출원전략(취하·재출원 등)이 구사되고 있으나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부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출원전략에 제약
- (개선방안) 지식재산권 포기 시 부처 승인 대상에서 출원 특허를 제외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의 다양한 지식재산 출원전략을 지원

## 4 시사점 및 제언

- (요약) 혁신법 취지 정착을 위한 부처별 규정 점검 및 다각적 방식의 현장의견 수렴 등 선제적·통합적 접근을 통해 현장규제 개선 및 혁신법의 현장 착근 추진
  - 혁신법과 부처·전문기관별 자체규정 간 불일치로 인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사업 및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선도적 연구개발 촉진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중장기 목표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체제의 혁신을 위해 제도개선의 중장기적 목표 및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운영 필요
  - '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향상" 목표에 이어 '22년도 "자율과 창의의 제고,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통한 국가연구 개발 성과 제고 촉진" 목표에 따라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등 자율적·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
  - 미래지향적 혁신시스템 설계 및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 수요 중심의 단발적 제도개선 방식 및 목표 설계를 넘어 중장기적 제도개선 목표·로드맵 수립 필요
  - 글로벌 현안 및 사회문제, 국정과제 등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임무 지향을 위해 중단기적(2~3년) 추진과제 발굴 및 단계별 개선 추진 필요
- (제도운영의 전략성 강화) 신속한 현안대응 및 선택과 집중 기자 마련
  - 재난·재해, 국제적·경제적 위기 대응 등 시급한 문제 해결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특정 분야 연구개발 집중지원 및 특별조치 등을 위한 제도 운영의 전략성 강화 필요
  - 상시 현안 분석 및 제도개선 연계를 위한 과학기술 및 법제도 전문가 자문 그룹 운영 등 전문성·전략성 확보 필요
- (제도개선의 선순환 체계 구축) 현장규제 밸굴-개선-현장착근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통한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 정례화된 제도개선 체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수요 밸굴-개선-현장착근에 이르는 선순환적 제도개선 시스템으로의 전환 필요
  - 개선안 마련 시점부터 현장 안착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점검 및 지원 체계 구축·운영 필요
  - 매년 추진되는 연구현장 제도개선 수요의 밸굴, 검토, 개선방안 도출 방식을 체계화하고 효과적 운영을 위해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위원회 역할을 재정립

## [ KISTEP 브리프 발간 현황 ]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01 (22.02.09.)	시스템반도체	채명식 (KISTEP)	기술동향
02 (22.02.10.)	미 하원 「2022년 미국 경쟁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최창택 (KISTEP)	혁신정책
03 (22.02.23.)	메디컬 섬유소재	정두엽 (KISTEP)	기술동향
04 (22.03.02.)	2020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05 (22.03.14.)	2020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강유진·김주원 (KISTEP)	통계분석
06 (22.03.16.)	바이오헬스 정책·투자동향	김종란·강유진·홍미영 (KISTEP)	기술동향
07 (22.03.18.)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과학기술 동향과 시사점	김진하·이정태 (KISTEP)	혁신정책
08 (22.03.21.)	미래 스마트 팩토리 유망 서비스	KISTEP·ETRI	미래예측
- (22.03.23.)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기여할 10대 미래유망기술	이동기 (KISTEP)	이슈페이퍼 (제323호)
09 (22.03.30.)	바이오연료	박지현·강유진 (KISTEP)	기술동향
10 (22.04.04.)	2020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11 (22.04.08.)	일본 과학기술·경제안전보장전략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규판(KIEP) 김다은·홍정석(KISTEP)	혁신정책
12 (22.04.13.)	6G 통신 기술	이승필·형준혁 (KISTEP)	기술동향
13 (22.04.18.)	우리나라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 2020년도 기준 -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14 (22.04.27.)	소재 신(新)연구방법론	정두엽·조유진 (KISTEP)	기술동향

- (22.04.29.)	대전환 시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	변순천 외 (KISTEP)	이슈페이퍼 (제324호)
15 (22.05.02.)	OECD MSTI 2022-March의 주요 결과	정유진 (KISTEP)	통계분석
16 (22.05.16.)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현황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 (22.05.18.)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협이슈 및 대응 전략: 인공지능 역기능을 중심으로	구본진 (KISTEP)	이슈페이퍼 (제325호)
- (22.05.26.)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과제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제언	최창택 (KISTEP)	이슈페이퍼 (제326호)
17 (22.06.02.)	2020년 미국의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분석 - NSF, Doctorate Recipients from U.S. Universities -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 (22.06.08.)	일반국민은 2022년 정부R&D예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승규·박지윤 (KISTEP)	이슈페이퍼 (제327호)
18 (22.06.09.)	세정부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고윤미·배용국·양은진 ·심정민(KISTEP)	혁신정책
19 (22.06.15.)	2021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김선경 (KISTEP)	통계분석
- (22.06.17.)	감염병 위기대응 4대 영역별 핵심기술 및 정부R&D 지원방안	김주원·홍미영 (KISTEP)	이슈페이퍼 (제328호)
20 (22.07.04.)	2022년 IMD 세계경쟁력 분석	김선경 (KISTEP)	통계분석
21 (22.07.06.)	양자정보기술	유형정 (KISTEP)	기술동향
- (22.07.11.)	신산업 정책의 민관협력(PPP) 주요 이슈 분석	신동평·허정·권용완 (KISTEP)	이슈페이퍼 (제329호)
22 (22.07.11.)	메타버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이나래 (KISTEP)	혁신정책
23 (22.07.18.)	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 - 2021년 전국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 기준 -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24 (22.08.01)	미국 대학의 연구활동 현황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25 (22.08.08)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주요국 세액공제제도 신설 동향 및 시사점	조길수·유혜인 (KISTEP)	혁신정책
26 (22.08.17)	CCU(이산화탄소 활용)	여준석·김태영 (KISTEP)	기술동향

27 (22.08.18.)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현황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 (22.08.24.)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의 주요 장점과 제언	박일주·이지은 (KISTEP)	이슈페이퍼 (제330호)
28 (22.08.25.)	바이오플라스틱	박지현·홍미영 (KISTEP)	기술동향
29 (22.08.31.)	美, 「반도체 및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송원아·이양경·김다은 (KISTEP)	혁신정책
30 (22.09.05.)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31 (22.09.16.)	K-방산 수출 성과와 민군 R&D 협력의 주요 시사점	임승혁·유나리 최충현·한민규 (KISTEP)	혁신정책
32 (22.09.19.)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한웅용·한혁 (KISTEP)	통계분석
33 (22.09.21.)	美,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종란·김주원 (KISTEP)	혁신정책
34 (22.09.28.)	오픈사이언스 시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연구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이민정 (KISTEP)	혁신정책
35 (22.10.04.)	2020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2500 기업 현황	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36 (22.10.05.)	지능형 센서 플랫폼	권정은·조유리 (KISTEP)	기술동향
- (22.10.06.)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망 분야 도출 및 정부지원 방안	박지현·홍미영 (KISTEP)	이슈페이퍼 (제331호)
- (22.10.20.)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현황 진단 및 기술적 한계 극복전략	김진용·김어진 (KISTEP)	이슈페이퍼 (제332호)
37 (22.10.31.)	디지털 역기능 전망과 대응 방향	KISTEP·ETRI	미래예측
38 (22.11.03.)	메타물질	김용준·이학주·임승혁 (수원대학교·파동에너지 극한제어연구단·KISTEP)	기술동향
39 (22.11.03.)	'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및 제언	서지현·김희정 (KISTEP)	혁신정책